

홈 요양원 운영규정

제1장 입소

01. 입소정원 및 입소자의 모집

주 입소대상자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및 등급 외 어르신을 포함한 입소정원을 23명으로 한다. 입소정원관리를 위한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시설 정보를 기본 수단으로 한다. 그 외 지역사회활동 참여, 운영주체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 연결망을 통해서 시설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홍보를 2차 수단으로 한다.

0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01)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02)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및 등외자로서 실비입소자

03) 계약기간

(01) 계약기간은 등급인정서의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체결 한다.

(0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03) 재계약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후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0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0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06) 입소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04) 급여내용

입소자가 시설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신체지원서비스(구강관리, 목욕, 세면, 머리감기, 몸단장 등), 식이서비스(아침, 점심, 저녁식사 및 간식), 환경관리(침구 및 의복세탁, 침실청소 및 개인용품정리정돈), 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배설관리, 욕창 및 낙상예방관리 등의 도움을 제공받는다.

05) 입소 및 이용료 납부

(0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등급별 본인일부부담금과 해당 비급여 항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 본인일부부담금: 일반(20%), 의료보험료순위 25%이하(12%), 의료보험료순위 25%이상 50%이하(8%), 기초수급권자(0%)

(02) 이용료는 매월 지정된 날까지 납부한다.(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

(03) 이용료 납부방법은 시설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04) 입소자의 요구에 따른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가 별도 부담한다.

(05)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와 입소자의 요구에 따른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 즉 실비만을 산정해야 한다.

가. 식사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나. 이·미용비; 입소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다. 상급 침실료; 해당 없음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06) 비급여항목 등 이용료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장이 결정한다.

06)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01) 입소자(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

가. 입소자는 안락하고 편안한 입소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기관이나 종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입소자는 보호자가 불편을 호소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경우 면회나 전화통화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 보호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는 물론 시설생활의 만족도나 불편함에 대한 궁금증을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할 시

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입소자(보호자)는 입소이용료 납부기준을 예외 없이 준수한다.

마.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애완동물사육, 음주, 흡연 등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바. 보호자는 입소자의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통보한다.

사. 입소자와 보호자는 기타 건강관리나 안전을 위한 시설생활 규칙을 이행한다.

(02) 장기요양기관

가. 입소자의 건강관리 및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나. 입소자의 신변이상이나 건강상태악화 등은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다. 양질의 식사제공, 활동도움, 그리고 생활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은 종사자 교육에 힘쓴다.

라. 쾌적한 시설환경을 위해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상태 유지관리에 힘쓴다.

마.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도록 힘쓴다.

바. 입소자(보호자)로부터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즉시 이에 대응하여 입소자의 안락한 입소생활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힘쓴다.

0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01) 입소물품

입소자는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시설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02) 면회 및 외출, 외박

가. 입소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단 계약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 할 수 있다).

나. 입소자는 외출·외박 시 사전에 시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입소자나 그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라. 외출·외박 중 입소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설에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03) 시설물 배상

- 가. 입소자는 시설의 시설물을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이나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보호자)가 원상회복한다.
- 나. 입소자 또는 그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은 시설물의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그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08) 계약해지 요건

(01) 입소자의 해지

- 가. 입소자 또는 그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02) 시설의 해지

-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나.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다.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입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09) 퇴소

- (01) 시설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02) 입소자 또는 그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소자에게 통보 후 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자 또는 그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